

산업재산권의 동향과 과제

안 광 구

Trends and Problems to Solve in Industrial Property Rights

Kwang-Koo Ahn



- 안광구(특허청장)
- 1942년생
- 행정학 전공

1. 머리말

오늘날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 자본에서 기술로 옮겨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술 개발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권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은 산업재산권을 전통적인 활용방법인 시장독점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수익을 올리는 경영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 실로 과거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업재산권이 이제는 기업경영의 전면에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개관한 후 그 중요성, 국내외 동향,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산업재산권의 뜻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함께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저작권이 문학, 예술 또는 학술의 범위에 관련된 창작을 보호하는 이른바 문화적 무체재산권이라 한다면, 산업재산권은 산업에 관련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산업적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이중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이며 의장은 주로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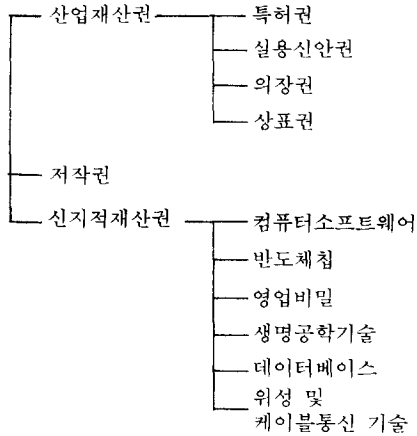


그림 1 지적재산권의 분류

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상표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특별하고 현저한 것을 일컫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영업비밀(know-how), 생명공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위성 및 케이블 통신기술에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신지적재산권(newly emerging intellectual properti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특허제도의 개요

3.1 특허제도의 본질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하는 자에게 공개의 댓가로써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자에게는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의 허락하에,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룩하려는 제도

이다. 다시 말하면 “발명자에게는 발명의 보호에 의한 이익을, 공중에게는 발명의 이용에 의한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장려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2 특허제도의 기원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는 15C경 중세 도시 국가인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이며 유명한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가 바로 당시의 특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의미의 특허제도로써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는 역시 1624년에 제정된 영국의 특허제도, “전매조례”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많은 우수한 발명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후 1790년에 미국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1791년 프랑스에서, 1877년 독일에서 각각 특허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근대화의 선두주자인 일본이 1885년 가장 먼저 실질적인 특허제도를 할 수 있는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882년 “지석영”선생이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1908년 순종칙령 196호로 특허법이 공포되었고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를 거쳐 1981년에 이르러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특허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모체가 되어 오늘날까지 발전하여왔다.

3.3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명의 의미와 다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이라 부르고 있으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하고,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창작성(새로움)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자명한 사실이 아닌 고도한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창작이라 하더라도 계산방법, 상품의 진열방법, 작도방법 등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산물이기는 하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은 발견과 다르다. 발견은 이미 있는 것을 누군가가 찾아내어 세상에 새로 소개하는 것이나, 발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창작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발견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발견이 발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미 알려져있던 목재살균용물질 “DDT”에 “살충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살충제 DDT의 발명으로 이어진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발명은 Know-How와도 구별된다. Know-How는 비밀이 유지되면서 이용되는 기술이고, 특허는 공개되어 활용되는 기술이라는 면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Know-How란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또는 영업상의 지식 등으로 비밀이 누설되면 그때부터 Know-How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 Know-How의 생명은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타인이 이용한다 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타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하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Know-How는 소유자 스스로가 그 비밀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더 이상 비밀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Know-How에 대하여는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3.4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특허요건)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은 첫째 산업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산업상 이용성), 둘째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셋째 이미 있는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어야(진보성) 한다. 이것을 특허요건이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며(거절사정) 착오로 특허권이 허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출원발명이 이상의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정책적 견지, 또는 공익상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첫째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둘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다. 후자의 예로서 지폐위조기계, 도박용 기구 등을 들 수 있다.

3.5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같은 내용의 발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특허권을 허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와 선발명주의(先發明主義)가 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되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선후를 가리지 않고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들 양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중시하여 대다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2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3.6 크로스-라이센스

크로스-라이센스(Cross-License)란 상대방의 특허발명을 서로 사용(실시)할 수 있게 하는 특허상호공유사용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개인) 상호간에 성립되는 계약이다. 상대방의 특허기술을 서로 이용하는 것이 자사의 기업활동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보통 이루어지는 크로스-라이센스이다.

둘째, 이용발명간에 성립되는 실시권이다. 예를 들면, 후출원자 “갑”이 선출원자 “을”의 발명을 이용하여 창안한 발명으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갑”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갑”이 “을”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을”이 반대로 “갑”의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통상실시권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갑”, “을” 쌍방간에 통상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도 크로스-라이센스라고 한다.

3.7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위법한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미치며 외국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반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아니한다. 특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중 소멸된다. 이러한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의 효력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발

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또는 의약발명에 대한 약사법상의 조제행위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8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제도는 국가산업발전과 발명자의 보호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시기적 한계로서 존속기간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는 유익할지 모르나, 진부한 기술이 권리로서 장기간 존속되어 공중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허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는 발명자와 공중의 이익을 조정하는 적절한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서 종료하도록 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9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는 새로운 기술사상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같다.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대부분 특허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말하듯이 특허는 “대발명”이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는 비유와 같이 그 보호대상이 상이하여 다음의 부분적인 제도적 차이점이 있게 된다.

- 특허는 고도의 기술사상을 대상으로 하나,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낮은 기술사상도 대상이 된다.
- 등록대상이 특허는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방법

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권리 존속기간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5년(다만,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다만,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3.10 특허청의 업무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등 소위 산업재산권 관련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이 하는 업무중 고유업무로서는 심사업무, 심판업무 및 등록업무를 들 수 있다.

“심사”는 법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업무이며, “심판”은 특허의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이 특허분쟁(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문제나 고소 등 형사문제는 법원에서 처리)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재판과 유사한 업무이며, “등록”은 형성된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변동사항(특허권의 발생, 이전, 소멸, 실시권의 설정, 질권설정 등)을 특허원부에 등재하는 업무로서 부동산 등록업무와 매우 유사하며,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등록공무원이 이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상표 등의 부정행위 사용행위를 지도·단속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업무, 특허출원·등록·심판청구사무를 대리하는 변리사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아울러 관장한다.

4. 산업재산권의 역할

4.1 기술개발 결과의 보호 및 장려수단

기술개발결과를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부여하고 이를 장

려하는 것은 기술개발촉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표창, 조세감면, 보상금 지급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어느 것도 기술개발 결과를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산업재산권제도와는 비교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보호 및 기술개발 장려수단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92년 12월 말 현재 특허제도는 141개국, 실용신안제도는 34개국, 의장제도는 66개국, 그리고 상표제도는 87개국이 채택·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제도가 기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의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1982년에 일본 특허청이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기술개발 동기의 30%가 특허권을 얻는 데에 있었으며 23%가 기업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권 획득이 기술개발의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86년에 미국의 Edwin Mansfield에 의하여 조사된 바에 의하면 '81년부터 '83년까지 상업화되거나 개발된 기술중에서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상업화되지 않았을 기술은 약품분야는 65%, 화학분야는 30%, 기계분야는 15%에 달하고 있으며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개발자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기술은 약품분야는 60%, 화학분야는 38%, 기계분야는 1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시장의 독점적 장악수단

산업재산권을 독점배타권적인 특성을 가진 산업재산으로 잘 이용할 경우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를 미국 Dupont사의 Nylon 특허와 Gillet사의 안전면도기 특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upont사는 1940년에 최초로 Nylon을 발명한 이래 이에 관련되는 25,000

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50개 Nylon Plant에서 매년 60억 파운드의 직물을 생산하여 '88년 매출액이 325억 불에 달하는 등 세계 제1의 화학회사로 성장하였다. 한편 Gillet사는 1940년 최초로 안전면도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후 설립되어 1991년까지 면도기 관련특허를 1,287종 획득하였고 '91년 매출이 50억 불로서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4.3 기술공개로 기술개발 촉진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아무나 해당발명을 문헌적 또는 연구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명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통하여 공개되며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특허청에 의하여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된다. 특허제도가 있으므로 발명의 내용은 과학계, 산업계 등에 신속히 알려지게 되어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산업의 발전 등을 촉진하게 된다.

4.4 기업경영상의 중요한 전략수단

최근 국력의 지표가 자본에서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보호 장벽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술의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81년부터 '90년까지의 기술도입 5,214건 중 81.6%에 해당하는 4,256건이 산업재산권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유용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Cross-License를 통하여 우리의 산업재산권 제공을 기술이전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이 기피하는 기술도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기술도입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기술개발 결과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표 1 TI사의 경상이익 대 로얄티 수입

연도 구분	1985	1986	1987	1988
경 상 이 익	-155	99	405	516.4
로얄티수입	10	20	191.2	123.8

(단위 : 백만불)

기업의 경영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로얄티가 특허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몇 %라는 개념으로 산정되어 왔으나 9억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던 '85년의 플라로이드사 대 코닥사의 인스턴트카메라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 로얄티가 본격적으로 고액화되기 시작한 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GE/RCA나 TI사 등 미국기업들은 특허를 침해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큰 수입원의 하나인 특허권사업으로 인식하면서 보다 빈번하게 특허 클레임을 제기하고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사의 경우 로얄티 수입이 '85년의 천만 불에서 '88년의 1억 2,380만 불로 급격히 증가하여 '88년에는 경상이익의 20% 이상을 로얄티에서 얻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분쟁에 있어서 기업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본기술은 미국, 일본 등이 기본특허로 권리화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기술을 개량하여 주변기술을 권리화한다면 선진국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서 크로스라이센스 등을 통하여 로얄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내외 산업재산권 동향

5.1 해외동향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

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하면 1991년 한 해 동안 WIPO 가입국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은 '90년 대비 1.2% 증가한 319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특허는 전년 수준인 166만 3천 건, 실용신안은 7.9% 증가한 19만 9천 건, 상표는 1.3% 증가한 111만 7천 건 그리고 의장은 5.4% 증가한 15만 2천 건이 각각 출원되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일본이 '90년에 이어 '91년에도 70만 3천 건으로 세계 1위의 다출원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31만 4천 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는 17만 9천 건을 기록한 독일이, 4위는 17만 2천 건을 출원한 프랑스가, 5위는 13만 9천 건을 출원한 영국이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12만 8천 건(국제특허조약(PCT) 출원중 번역문 미제출분 포함)을 기록하여 6위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표 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16위에 그침으로써 아직도 기술

수준이 선진대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본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87년도 2위였던 구소련은 해가 갈수록 출원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88년에는 3위, '89년에는 4위, '90년에는 6위, '91년에는 14위로 급격히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88년 이후 2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8년의 8위에서 '89년에 7위로 올라섰으며 '90년에는 8위로 물러섰다가 91년에는 6위로 부상하였다.

표 3 '91년도 출원 20대 국가

순위	특·실·의·상(총계)		특 허	
	특·실·의·상	총계	특	허
1	일 본	703,889	일 본	381,175
2	미 국	314,502	미 국	178,122
3	독 일	179,013	독 일	110,305
4	프랑스	172,817	영 국	95,979
5	영 국	139,036	프랑스	79,951
6	한 국	128,760	EPO	66,822
7	스페인	123,727	이탈리	53,600
8	중 국	117,644	네덜란드	52,843
9	브라질	72,488	스페인	49,283
10	EPO	66,822	스웨덴	48,676
11	캐나다	64,252	스위스	48,587
12	스웨덴	62,435	오스트리아	43,731
13	스위스	55,705	벨기에	42,173
14	구소련	54,953	덴마크	40,006
15	이탈리	53,600	캐나다	38,380
16	오스트리아	53,584	한 국	36,156
17	호 주	53,538	룩셈부르크	35,807
18	네덜란드	53,241	그리스	32,359
19	덴마크	50,592	구소련	30,180
20	벨기에	42,173	호 주	27,783

표 2 최근 5년간 세계산업재산권 출원의 연도별 순위

연도 순위	'87	'88	'89	'90	'91
	1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2	구소련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3	서 국	구소련	서 독	프랑스	독 일
4	미 국	프랑스	구소련	서 독	프랑스
5	프랑스	서 국	영 국	영 국	영 국
6	영 국	영 국	스페인	구소련	한 국
7	브라질	스페인	한 국	스페인	스페인
8	한 국	한 국	프랑스	한 국	중 국
9	스페인	브라질	중 국	브라질	브라질
10	중 국	중 국	캐나다	캐나다	EPO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보합 내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고 내국인 출원비율마저 '91년의 50.2%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비중도 '91년에 88.3%로 늘어나고 있어 미국·일본 간의 산업경쟁력의 반전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의 특허등록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1975년에는 미국업체가 8개, 독일업체가 2개였으나 1992년에는 일본업체가 6개 포함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기업은 4개에 불과하여 미국기업의 퇴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90년에는 다른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없이 상표만 5만 7천 건이 출원되었으나 '91년에는 1만 1천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총 11만 7천 건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간의 산업재산권현황을 비교하면 '91년 산업재산권 총출원건수는 한국이 12만 8천 건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한국의 1/4 수준인 3만 4천 건에 불과하다. 이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한국이 3만 6천 건으로 이중 내

국인출원은 36.7%인 1만 3천 건이며 북한은 내국인출원이 없이 4천여 건 전부를 외국인 이 출원하고 있으며 의장은 한국이 2만 건을 출원하여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1만 건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는 한국은 4만 6천 건이 출원되어 이중 내국인 출원의 비율이 71.8%인 3만 3천 건인데 비하여 북한은 1만 9천 건 출원중 내국인출원이 70%인 1만 3천 건을 차지하고 있다.

5.2 국내동향

1992년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총출원은 127,810건으로 1991년의 120,736건에 비하여 5.9% 증가하였다.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표 5와 같이 '92년 총출원 127,810건중 상표출원이 전체의 35.3%인 45,124건, 특허가 24.3%인 31,073, 실용신안이 22.4%인 28,665건, 의장이 18.0%인 22,948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출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전체출원중 내·외국인 출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낮아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높았으나 '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져 외국인 출원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건비상승 및 외국과의 특허분쟁이 빈발해짐에 따라 기술개발분위기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는 내국인의 출원이 급증하고 비중도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에서와 같이 '92년의 내국인출원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98,798건을 나타냈으나 외국인의 출원은 종래의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전년대비 3.5% 감소한 29,012건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국인의 비중이 77.3%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국인 출원비율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미국내 특허등록 상위 10대 기업

순위	1975	1992
1	(미) General Electric 835	(일) Canon KK 1,106
2	(미) Dupont 537	(일) Toshiba 1,022
3	(미) Westinghouse 502	(일) Mitsubishi Denki 958
4	(미) General Motors 495	(미) General Electric 957
5	(미) IBM 489	(일) Hitachi 951
6	(미) Xerox 465	(미) IMB 842
7	(독) Bayer AG 451	(미) Kodak 775
8	(독) Siemens AG 448	(미) Motorola 685
9	(미) RCA 401	(일) Fuji Photo Film 641
10	(미) U.S. Philips 391	(일) Matsushita 608

(단위 : 건)

산업재산권의 동향과 과제

표 5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건)

연도별	특 허	실용신안	특·실 소계	의 장	상 표	계
1990	25,820 (22.6)	22,654 (19.9)	48,474 (42.5)	18,769 (16.5)	46,826 (41.0)	114,069 (100)
1991	28,132 (23.3)	25,895 (21.4)	54,097 (44.7)	20,097 (16.6)	46,612 (37.7)	120,736 (100)
1992	31,073 (24.3)	28,665 (22.4)	59,738 (46.7)	22,948 (18.0)	45,124 (35.3)	127,810 (100)

* ()는 당해년도 총출원에 대한 구성비

표 6 내·외국인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건, %)

구분 \ 연도별	'87	'88	'89	'90	'91	'92
	내국인	69,632 (75.0)	68,300 (71.5)	71,103 (69.1)	81,713 (71.6)	90,659 (75.1)
외국인	23,196 (25.0)	27,271 (28.5)	31,770 (30.9)	32,356 (28.4)	30,077 (24.9)	29,012 (22.7)
계	98,828 (100)	95,571 (100)	102,873 (100)	114,069 (100)	120,736 (100)	127,810 (100)

* ()는 당해년도 출원에 대한 구성비

특허와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92년의 출원량은 59,738건으로 80년의 13,628건에 비하여 4.4 배의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내국인 출원도 80년까지 9천여 건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여 '92년에 4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그 비율도 전체의 73.4%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표 8에서와 같이 특허·실용신안분야

에 있어서의 '92년 기업체의 출원은 '91년 전체의 11.8%에 해당하는 29,313건에 이르고 있어 '81년대비 25배 증가되었다. 이는 기업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이 급격히 활발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출원이 '81년 8,673건에서 '92년에 14,562건으로

표 7 특허·실용신안분야 출원현황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계
'70	7,350(91.7)	663(8.3)	8,013(100)
'80	9,177(67.3)	4,451(32.7)	13,628(100)
'92	43,875(73.4)	15,863(26.0)	59,738(100)

(단위: 건, 구성비 %)

표 8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 기업체 및 개인출원현황

	기업	개인	계
'81	1,165(11.8)	8,673(88.2)	9,838(100)
'85	7,927(39.0)	12,391(61.0)	20,318(100)
'90	19,922(64.8)	10,821(35.2)	30,743(100)
'92	29,313(66.8)	14,562(33.2)	43,875(100)

(단위: 건)

표 9 특허·실용신안분야 산업별 출원 추이

(단위: 건, %)

구분 \ 연도	'85	'91	'92	증 가 율	
				'85~'92	'81~'92
기 계	7,225	11,685	13,606 (22.8%)	9.5	16.4
전기·통신	8,853	22,935	23,776 (39.8%)	15.2	3.7
화 학	3,068	6,409	6,677 (11.2%)	11.7	4.2
기 타	9,989	12,998	15,679 (26.2%)	6.6	20.6
계	29,135	54,027	59,738 (100.0%)	10.8	10.8

* () 내 숫자는 구성비(%)

1.7배 늘어난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92년 출원현황을 산업부문별로 표 9에서와 같이 보면 전기통신 부문이 23,776건으로 전체의 39.8%, 기계부문이 13,606건으로 전체의 22.8%를 각각 점유하여 이 2개부문의 출원이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기계부문이 16.4%로 높게 나타났으나 '85년부터 '92년까지의 7년간의 평균증가율은 전기통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분야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CFC대체냉매의 사용에 따른 스크롤 압축기의 운전제어기술에 대한 출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절전형 냉장고의 냉동사이클 구동제어기술에 관한 출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보일러연소효율향상을 위한 닥트내에서의 재연소장치, 연소장치의 연소 및 그 부착구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공작기계 부분에서는 자동공구교환장치와 생산라인에서 공작물의 운반, 선별, 위치결정 등을 위한 장치에 관련된 기술이, 로봇부문에서는 프로

그램제어기술 및 Finger Arm 조절기술이, 프린터부문에서는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분사 방식과 전자사진 프린터기술이, 또한 밸브부문에서는 다방향 밸브 및 밸브의 조작수단에 관한 기술이 많이 출원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동차 관련기술의 출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체, 조향분야는 Power Steering의 채택, 핸들 Locking 방지, 전후륜의 동시조향, 차체의 경량화와 안정성을 위한 신소재채택(예: 알루미늄) 등에 관한 출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력 전달분야는 변속장치의 Computer제어, 정속 주행장치에 관한 출원이, 제동장치분야는 브레이크의 제동력 향상, 차량역진방지, 과속 또는 빗길주행시의 미끄럼방지 장치인 ABS (Anti-Skid Braking System) 등에 관한 출원이, 차체현가 장치분야는 승차감 향상을 위한 자동제어 속업쇼바, 차체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등에 관한 출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분야의 내·외국인 출원의 내용을 보면 내국인 출원을 타이어, 창문, 실내설비 등 주변기술 및 악세서리 위주

이나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는 동력전달장치 등 핵심기술분야의 전자화된 첨단기술에 관한 출원을 많이 내고 있다.

6. 산업재산권 분쟁현황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협상시 제시되는 로얄티도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출의 길이 막히는 등 기업의 사황에 직결되기도 하여 국가적으로도 무역 및 산업정책수립·집행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6.1 분쟁현황

미국에서의 특허분쟁현황을 살펴보면 '74년부터 '90년까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사건 320건 중에서 특허분쟁이 80%에 해당되는 24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9%인 199건에 대하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기간중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총19건으로서 이중 10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87년부터 '90년까지 한국특허청에서 처리된 내·외국인간의 산업재산권분쟁은 총 682건으로 이중 61%인 417건에서 한국인이 승소하였다. '89년까지의 한국법원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총 79건이며 이중 11건이 내·외국인간 분쟁으로 나타났으며 4건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인정되었다. 이 79건 중에는 상표관련 분쟁이 28건, 특허, 실용신안이 26건, 의장이 12건, 부정경쟁 7건 및 저작권 6건이 포함되어 있다.

6.2 분쟁의 발생배경 및 원인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이 대외 경쟁력 상실에

따른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경쟁력 회복노력보다는 하이텍 기술분야에서의 수익성제고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GE/RCA나 TI사 등 미국기업들은 특허권자채를 하나의 수입원으로 인식하면서 빈번한 특허분쟁을 제기하고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들은 그동안 미국기업들의 집중적인 특허공세를 받은 결과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였으나 근래에는 미국의 특허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의 제조업체들에 적극적으로 특허공세를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 VTR 등의 대선진국 수출을 급속하게 늘려 이들을 자극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질 및 양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미국의 특허공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관리체제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3 최근 특허분쟁의 성격

최근의 특허분쟁의 성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보면 첫째, 특허로얄티 요구액 또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고액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특허분쟁에서 로얄티가 특히 높았던 예는 85년의 폴라로이드사대 코닥사간의 인스턴트 카메라 특허분쟁의 9억 불, 미국 허니웰사와 일본 미놀타사 간의 카메라 자동초점기술 특허분쟁의 1억 2천만 불 등을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선소송 후협상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점등을 이용하여 특허침해업체가 조기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1991년 9월 미국의 로랄페어차일드사가 CCD 구조 및 제법특허 2건으로 전세계 30

여 개 전자업체에 특허침해소송을 걸어놓고 제품가격의 7.5%라는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한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세번째는 기업들뿐 아니라 개인발명가들까지 특허 클레임을 무차별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는 미국의 개인발명가인 레멜슨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Vision System, FA 등 45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Sony, 모토롤라 등의 전세계 전자업체에 대하여 대규모 클레임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네번째로 부품업체보다 조립업체에 특허클레임을 제기하여 조립업체의 특허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조립업체는 선진국에서 구입한 일부 부품 때문에 완제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로얄페이 차일드사와 삼성 등의 CCD특허소송전에서도 같이 부품자체의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다섯째는 근래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 특허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특허공세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특허료 수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Sony의 CDP, 카세트, 이어폰, 8mm VTR 관련 특허클레임건과 히타치의 세탁기, 플로피디스크, VTR 관련 특허클레임건 등이 있다.

7.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현황의 실태

7.1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의 특징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의 특징 중의 하나는 특허·실용신안분야의 내국인출원건수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그 절대건수가 적다는 점이다. 표 10에서와 같이 '90년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분야에서의 우리 국민의 국내 출원 건수는 30,744건

표 10 한·미·일에서 자국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추이

	'70	'75	'80	'85	'90
한국	7,350	8,378	9,177	20,317	30,744
미국	76,195	64,446	62,098	63,874	91,410
일본	240,208	314,110	356,118	477,938	470,402

표 11 국민 1인당 출원건수 비율 추이

	한국	:	미국	:	일본
'70	1	:	1.6	:	9.6
'75	1	:	1.3	:	11.7
'80	1	:	1.1	:	12.9
'85	1	:	0.6	:	8.2
'90	1	:	0.5	:	5.5

이며, 미국은 91,410건으로 우리나라의 3배, 일본은 470,402건으로 우리나라의 15배에 해당된다.

국민 1인당 출원건수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한국을 1로 할 경우 일본은 '80년까지는 우리의 12.9배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80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으며 '80년까지는 한국보다 국민 1인당 출원건수가 많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적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출원건수가 미국·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90년의 경우 국민1인당 출원건수 비율은 한국:미국:일본이 1:0.5:5.5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12에서와 같이 '92년의 경우 출원이 많은 상위 10대기업의 출원이 전체기업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허가 62.6%, 실용신안이 56.4%, 산업재산권 전체의 경우에는 38.1%

표 12 10대 다출원기업의 출원비중

	특허	실용신안	4권 전체
'88	63.3%	76.8%	43.7%
'92	62.6%	56.4%	38.1%

표 13 중소기업의 출원추이

	'84	'92
출원	1,260건	4,826건
비중	23.5%	16.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다출원기업의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년의 43.7%에서 '92년의 38.1%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같은 출원의 편중현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출원은 절대건수가 '88년의 1,260건에서 4,82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오히려 23.5%에서 6.5%로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개술개발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7.2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제도 도입이 일천하여 일반국민 및 산업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계와 일반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체계가 미흡하여 특허기술 자료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복연구를 하거나 낡은 기술 또는 국내에 이미 있는 기술을 중복 도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91년도 시행한 "기술도입과 효과분석"에 따르면 '62년부터 '90년 사이에 국

내 821개 기업이 도입한 총 1,749건의 기술 중 55%에 해당되는 962건의 기술이 국내에 이미 있는 기술이었으며 또한 74%에 해당되는 1,295건의 기술은 개발된지 5년 이상된 낡은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여 특허관련 전담 부서가 설치된 업체는 제조업체수의 1.0% 수준인 749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 담당인원도 2,059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그나마 이들 전담부서의 업무도 대부분이 특허출원이나 권리유지 등 특허관리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업체수도 제조업체수의 0.4%에 해당되는 259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7.3 국제분쟁에의 대응력 부족

선진국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공세, 특히 특허침해제소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적고 선진국의 특허에 대한 정보 파악이 미흡하여, 국제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정수준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관련제품의 생산, 수출이 위협받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TI(Texas Instruments)사가 1986년 2월 한국의 삼성 등 세계 1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D RAM 특허권 침해제소사건에서 삼성은 8,500만 불의 로열티를 지급한데 비하여 일본은 그들이 보유한 특허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7개사가 합계 1억 3천만 불이라는 비교적 적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결한 사건을 들 수 있다.

7.4 특허행정체제 상의 어려움

우리나라 특허청은 1977년상공부의 특허

표 14 한·미·일 특허·실용분야심사관수비교

	한 국	미국('91년)	일본('91년)
특·실 심사인력	130명	1,869명	955명
연간 심사건수	300건	91건	222건
담 당 분 야	587류	40류	70류

(’93년 9월 현재)

표 15 한·미·일 특허청 예산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예산액	278억 9천3백만 원	4억 8천6백만불 (약 3,800억원)	767억 9천4백만 엔(약5,200억원)

(’93년 기준)

국을 모체로 하여 발족된 이래 특허행정체제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출원량에 대응하여 심사관이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허·실용신안분야 심사관수는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88년도의 65명에서 93년 현재 13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미국·일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4에서와 같이 미국 및 일본의 심사관수는 91년 말 기준으로 각각 1,869명, 955명에 이르고 있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도 우리나라가 300건인데 비하여 미국이 91건, 일본이 222건으로 되어 있어 심사의 질적 수준향상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담당기술분야도 우리나라가 국제특허분류기준으로 587류인데 비하여 미국은 40류, 일본은 70류를 담당하고 있어 심사관의 전문성도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사관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분야의 심사처리에는 92년 말 기준으로 2년 10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미국의 1년 7월, 일본은 2년 4월에 비하여 길다.

한편 특허청 예산은 표 15에서와 같이 ’93년도 278억 원으로 미국의 3,800억 원, 일본

의 5,200억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8. 앞으로의 산업재산권 관련 과제

8.1 산업계가 해야할 일

8.1.1 기술개발노력의 강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산업계의 과제중 최우선 사항은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재산권을 내용과 양적인 면에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를 확충하고 종업원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연구인원과 특허담당인원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기술개발방향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세밀히 분석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복투자를 없애므로써 기술투자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8.1.2 산업재산권 관리체제 확립

기술개발의 결과를 적시에 권리화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기업내의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허전담부서는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경영자산으로 활용하는데 핵심요체가 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의 수집조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8.1.3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기반구축노력 확대

빈약한 부족자원과 한정된 시장으로 인하여 수출주도형의 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진국기업들과 기술마찰이나 특허분쟁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유럽의 기존수출시장은 물론 중

남미,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에 먼저 관련제품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선풍기 후비지니스” 전략을 추진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외출원에 의한 특허확보 노력과 아울러 국내·외의 개인발명가나 기업의 유효한 특허를 매입하여 일거에 외국에 산업재산권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기우려야 할 것이다.

8.1.4 특허분쟁 대응태세 확립

산업재산권 업무는 그 특성상 기술과 법률적 측면의 고도한 지식과 어학능력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전문가를 확보하여 특허관리 및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본특허에 대한 개량기술 또는 주변기술을 권리화하여 특허분쟁시 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통하여 로얄티를 절감하는 등 특허포지션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일기업의 특허공제에 대응하여 국내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 기업별로 대처하는 것보다 관련업체끼리 공동으로 대응하면 기업부담도 줄고 보다 강력한 협상도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끼리 특허동향에 대한 사전정보교류회를 갖거나 산업재산권 보유 수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비슷한 동일업종·업체끼리 크로스 라이선스를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8.2 정부(특허청)가 해야 할 일

8.2.1 심사·심판의 신속·공정화

기술개발의 결과를 신속히 권리화하여 줌으로써 기술개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심사인력의 적절한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사평가제도의 확대·실시, 심사관에 대한 부단한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 복합기술에 대한 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기

술정보원 등 외부전문자료조사기관의 활용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8.2.2 특허행정의 전산화 추진

국내외의 특허자료와 특허관련 판례 등을 Database화하여 심사업무 수행시 컴퓨터로 검색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92년부터 시작하는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것은 특허관련 자료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90년에 470만 건이 새로 발생) 심사의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는 77년에 159종 13만 4천 권에서 '92년에 526종 49만 5천 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미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EPO는 60년대부터 전산화를 추진하여 사무, 자료검색 등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8.2.3 발명분위기의 조성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의 양 및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발명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의 개최를 확대하고 대학에서의 산업재산권연구 및 인력양성을 촉진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체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장하는 등 산업계의 산업재산권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순회강연 및 연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94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8.2.4 특허기술의 실용화 추진 지원

기술개발의 결과 발생된 특허기술을 실용

표 16 외국의 전산화 운영사례

국 가	전 산 화 시작년도	중장기 전산화계획 추진		추진 결과
		추진 기간	소요예산	
미 국	'63	'81~'90(10년)	4,426억원	· 사무, 자료검색의 전산화 · 전자출원, 사무, 자료검색 전산화 · 사무, 자료검색의 전산화
일 본	'64	'84~'93(10년)	8,018억원	
EPO	'69	'86~'94(6년)	2,494억원	

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 체제를 강화하고 국내 동종업체간 동종제품의 중복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특허기술의 협력화사업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82년부터 발명의 기업화를 위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권자 중 시작품 제작능력이 없는 학생, 영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발명 시작품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2년도 21건에 대하여 1억 7천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8.2.5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조류에 적극적 대응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조약은 기술선진국들이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로 인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보호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특허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체결을 주창하였다. 개발도상국들도 지적재산권보호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면서 기술선진국들과의 쌍무협정보다는 다자간협정을 통한 조약을 체결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제도의 보호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20세기에는 단순히 물건과 방법의 발명이 주된 보호대상이었으나 20세기중반에

의약, 화학물질, 음식물 등 물질이 보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식물의 신종종,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미생물 등이 보호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86년에, 반도체칩은 '9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식물의 신종종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에서 현재 그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9. 맺음말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요, 중요성, 국내외동향,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여야 하며 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산업계는 발명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나감과 아울러 산업재산권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산업재산권 행정체제를 신속히 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안광구, 1993, "산업발전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의 역할과 과제," 특허청.

- (2) 김해중, 1991, “국내외 자동차분야의 특허출원동향,” 특허청.
- (3) 요시후지 코우사쿠, 1989, “특허법개설,” 일본유비각.
- (4) 특허청, 1993, “산업재산권 동향과 대응 특허체제의 강화방안.”
- (5) 대한상공회의소, 1993, “기술경쟁시대의 특허관리전략.”
- (6) 특허청, 1993, “특허청연감(1992).”
- (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93,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1991)*. ■